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움 (2017.10.25) 토론자료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지분 보유 확대

(평가)

- 은행의 중소기업 지분 보유: 예금수취 금융회사의 위험도 증가 문제, 은행이 출자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 불공정경쟁 문제 등.
 - 금융투자회사의 중소기업 지분 보유: 금융투자회사의 이익과 투자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
 -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분 보유: 올바른 가치평가 유인이 가장 낮은 주체가 중소기업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규율기능이 발휘되기 어려운 문제.
- ==> 민간 금융그룹 계열사간 협업 방식이 바람직. 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형 금융그룹들이 많이 성장할 필요 (::대형 금융그룹의 경우 높은 고정비로 인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소극적)

□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원칙중심 규제 도입

(평가)

- 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규제준수의 실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 단, 동 제도 도입을 위해 감독당국의 유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원칙중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재량권 발휘가 필수적. but, 사후논란 발생시 감사원, 국회, 언론 등에 의한 책임 추궁이 강한 현실에서 감독당국의 재량권 발휘 유인이 존재할지는 의문. 사법부의 전문성도 뒤따라야 하는 문제 존재.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규제 완화

(평가)

- 인터넷은행과 전통은행과의 차이는 service delivery 방식 뿐→ 양자를 다르게 규제할 근거 찾기 어려움.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산업자본이 위기를 겪을 때는 심각한 문제 발생 가능 (예: 동양그룹 사태).
- 예금수취업(은행업)을 통해 혁신을 추구하는데 따르는 위험성 인식 필요→ 외국의 경우 핀테크 논의의 중심은 비은행 금융업과 기술의 결합.